

# 한국모태펀드 2019년 3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9년도 한국모태펀드 3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I. 개 요

###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2,500억원 내외	
투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li> <li>·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출자분야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단, 조합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li> <li>· 자세한 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대상 참조</li> </ul>	
출자 대상	①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②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소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⑤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서 창업자·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⑥ 역외펀드	국내법에 따른 조합 등(①~⑤)이 아닌 펀드로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펀드(해외VC 글로벌 펀드에 한함)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기본정보 온라인 신청 : 2019년 7월 10일(수), 14:00</li> <li>· [선택1] 온라인 접수 : 2019년 7월 10일(수), 14:00</li> <li>· [선택2] 현장 접수 : 2019년 7월 11일(목), 14:00</li> <li>※ 해외VC 글로벌 펀드의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li> </ul>	
조합 결성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해외VC 글로벌 펀드의 경우 6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li> </ul>	

##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 목표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신청가능 조합형태
혁신성장 <sup>주1)</sup>		300	750	40%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스마트공장		330	550	60%	
회수	M&A <sup>주1)</sup>	360	900	40%	
	LP 지분유동화	100	250	40%	
	엔젤세컨더리	180	300	60%	
여성기업		60	100	60%	창업투자조합
창업초기		100	170	60%	
지방기업 <sup>주2)</sup>		380	630	60%	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sup>주3)</sup>
해외VC 글로벌펀드 <sup>주4)</sup>		700	1,750	40%~60% <sup>주5)</sup>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역외 펀드
합 계		2,500 내외	5,400 이상		

주1) 1개 제안사 선정 예정

주2) 모태펀드 출자액 100억원 이내에서 개인투자조합 우선 선정

주3) 신청 가능한 운용사 요건은 별첨1 참조

주4) 해외VC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 공고('19.2.1)에 대한 변경 공고

주5) 약정총액의 40% 출자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 간 협약 등에 따라 해외 정부 및 소속기관 등이 공동 출자 하는 경우 또는 창업초기, 지방기업, 여성기업, 소셜임팩트 분야의 전문 투자 펀드로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까지 출자비율 상향 가능

###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되 모태펀드가 기존에 중점지원분야로 출자했던 분야 또는 정부 대책을 통해 발표된 정책목적성이 명확한 분야 등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시하여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투자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이어야 함.</li> <li>※ (예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후속투자(follow-on)하거나 해외진출지원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li> </ul>
스마트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에 S/W 또는 설비를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li> <li>* 생산 과정(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수요자 요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며, 최소비용으로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공장</li> <li>**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신성장정책금융센터, 붙임파일 참조)등을 참고하여 공급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운용사가 자유롭게 제안 가능</li> </ul>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 및 Buyout 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다음 ①~④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투자 건당 평균 투자 금액이 50억원 이상 이어야 함</li> <li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① 최대주주, ② 등기임원의 과반수 선임, ③ 대표이사 선임, ④ 투자한 투자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여 상기 ①~③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는 중소·중견기업 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총액의 40% 이내에서 투자 가능</li> </ul>
LP 지분유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이 기발행한 주식 등의 인수 또는 벤처조합(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지분 매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벤처펀드의 유한책임 조합원 지분 매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하여야 함</li> </ul>
엔젤세컨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 대상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CB, BW 포함)에 투자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구주</li> <li>② 엔젤투자자*가 엔젤투자매칭펀드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구주</li> <li>③ ①~②에 해당하는 기업의 신주. 단, 약정총액의 10% 이내</li> </ul> </li> <li>* 투자대상기업의 임직원,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법인(단,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에 한함) 및 엔젤투자매칭펀드</li> <li>**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li> </ul>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①~②에 해당하는 기업에 약정 총액의 30%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여성이 최대주주인 기업</li> <li>②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경우</li> <li>③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li> </ul> </li> </ul>
창업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또한 모태펀드가 정한 최소결성총액의 20% 이상을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ul> <p>※ 향후 출자사업에는 지방투자 의무를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변경예정</p>
지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펀드결성일로부터 4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ul> <p>*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제안할 경우 동일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 한도는 조합 결성 규모의 20% 이내로 제한</p> <p>** 업무집행조합원이 액셀러레이터(경영, Co-GP 포함)인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5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만 투자 가능</p>
해외VC글로벌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및 국내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목적에 적합한 펀드로서,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 약정액 이상을 투자</li> </ul>

#### 4-1. 주요 출자조건(개인투자조합·해외VC글로벌펀드 外 적용)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li> </ul>
자조합의 투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li> <li>* ‘일정비율’ 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li> <li>○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li> </ul>
추가증액결성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추가 증액 결성방식으로 신청 가능</li> <li>* 출자분야 및 주목적 투자대상, 투자의무 비율 등은 공고문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함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은 40% 이내)</li> <li>○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조합규약(안), 신규 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li> <li>○ 추가 증액 결성방식(Multiple Closing)은 동 출자사업 선정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증액 완료 되어야 함.</li> </ul>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li> </ul>
자조합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속기간 5년 이상, 납입기간은 2년 이상으로 조합 존속기간 내에서 운용사가 자율제안</li> </ul>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li> <li>○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스마트공장·엔젤세컨더리·여성기업·창업초기·지방기업 분야 신청 운용사 및 지역기반 운용사 (수도권 이외 본점 소재)에는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li> </ul> </li> <li>*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li> </ul> </div> </li> <li>○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 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li> <li>*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sup>주)</sup>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li> </ul>

항 목	내 용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장, 스마트공장, M&amp;A·LP지분유동화, 지방기업, 창업초기 : 3% 이상</li> <li>○ 엔젤세컨더리, 여성기업 : 0% 이상</li> </ul>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단, 이 경우 콜옵션 미부여) ※ 향후 출자사업에서 기준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음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li> <li>○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 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li> </ul> *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 <sup>주)</sup>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을 관리하여야 함</li> <li>○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li> <li>○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 감사인을 선정</li> </ul>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P 사용 의무화</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li> <li>○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li> <li>○ 선정된 운용사는 출자자 간 협의를 통해 모태펀드 기준규약(신규약)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li> <li>○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li> </ul>

주) 적용 예시

상황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관리보수	성과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총 3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A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2%p 하향	2.5%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4%	관리보수율 0.2%p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총 5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B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3%p 하향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0%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6%	관리보수율 0.3%p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 4-2. 주요 출자조건(개인투자조합에 적용)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5% 이상</li> </ul>
자조합의 투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li> <li>* ‘일정비율’ 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li> <li>○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li> </ul>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납(capital call)</li> </ul>
자조합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속기간 5년 이상, 투자기간은 4년 이내에서 운용사 자율제안</li> </ul>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li> <li>○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지방기업분야 신청 운용사 및 지역기반 운용사 (수도권 이외 본점 소재)에는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li> </ul> </li> <li>*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li> </ul> </div> </li> <li>○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 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li> <li>*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sup>주)</sup>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li> </ul>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이상</li> <li>※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단, 이 경우 콜옵션 미부여)</li> <li>※ 향후 출자사업에서 기준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음</li> </ul>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li> <li>○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 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li> <li>*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sup>주)</sup>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li> </ul>

항 목	내 용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을 관리하여야 함</li> <li>○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li> <li>○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li> </ul>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P 사용 의무화</li> </ul>																												
투자의사결정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집행조합원 외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투자의사결정기구(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 필요</li> </ul> <table border="1" data-bbox="427 846 1375 1496">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427 846 1375 887">외부전문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27 887 475 927">1</td> <td data-bbox="475 887 1375 927">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td> </tr> <tr> <td data-bbox="427 927 475 967">2</td> <td data-bbox="475 927 1375 967">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td> </tr> <tr> <td data-bbox="427 967 475 1052">3</td> <td data-bbox="475 967 1375 1052">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td> </tr> <tr> <td data-bbox="427 1052 475 1137">4</td> <td data-bbox="475 1052 1375 1137">창업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td> </tr> <tr> <td data-bbox="427 1137 475 1178">5</td> <td data-bbox="475 1137 1375 1178">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td> </tr> <tr> <td data-bbox="427 1178 475 1218">6</td> <td data-bbox="475 1178 1375 1218">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td> </tr> <tr> <td data-bbox="427 1218 475 1258">7</td> <td data-bbox="475 1218 1375 1258">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td> </tr> <tr> <td data-bbox="427 1258 475 1299">8</td> <td data-bbox="475 1258 1375 1299">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td> </tr> <tr> <td data-bbox="427 1299 475 1339">9</td> <td data-bbox="475 1299 1375 1339">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td> </tr> <tr> <td data-bbox="427 1339 475 1379">10</td> <td data-bbox="475 1339 1375 137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td> </tr> <tr> <td data-bbox="427 1379 475 1420">11</td> <td data-bbox="475 1379 1375 1420">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td> </tr> <tr> <td data-bbox="427 1420 475 1460">12</td> <td data-bbox="475 1420 1375 1460">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td> </tr> <tr> <td data-bbox="427 1460 475 1496">13</td> <td data-bbox="475 1460 1375 1496">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별 업무집행조합원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기구 구성 가능</li> <li>○ 투자의사결정기구 구성원 간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li> <li>○ 투자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역할(참관인 또는 의결권자)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li> <li>○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 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직원은 외부전문가로 참석이 불가함</li> </ul>	외부전문가		1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	2	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4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	5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7	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8	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	9	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	12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13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외부전문가																													
1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																												
2	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4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																												
5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7	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8	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																												
9	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																												
12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13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사무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가 사무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li> <li>○ 단, 사무수탁회사에 관한 제반비용은 개인투자조합의 비용으로 처리</li> </ul>																												



항 목	내 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집행조합원은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li> <li>○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li> <li>○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의 경우 정관 상 사업목적에 다음 i), ii)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li> <li>ii) 개인투자조합의 운용**</li> </ul> </li> <li>* 정관에 사업목적 미비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li> <li>** 접수 마감일까지 미반영시 반드시 서면으로 불가피성을 소명한 후, 조합 결성일 전까지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li> </ul> </li> <li>② 기술지주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사무수탁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 제출 필수(단, 외부투자기관과 공동 투자시에는 면제)</li> <li>③ 자회사 투자 등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후행투자 누적 투자 한도는 조합 결성 규모의 20% 이내로 제한</li> </ul> <li>○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li>

주) 적용 예시

상황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관리보수	성과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총 3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A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2%p 하향	2.5%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4%	관리보수율 0.2%p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총 5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B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3%p 하향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0%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6%	관리보수율 0.3%p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 4-3 주요 출자조건(해외VC글로벌펀드에 적용)

항 목	내 용
출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법에 따른 펀드(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역외 펀드</li> </ul>
투자대상 및 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 총액의 40% 이내 출자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벤처투자의 출자 약정액 이상을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li> <li>○ 단, 창업초기, 지방기업, 여성기업, 소셜 임팩트 분야에 약정 총액의 60%이상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할 경우 당해 전문 투자펀드의 출자비율을 적용</li> <li>* 이 경우 해외·국내 공동운용사는 창업투자조합, 해외 운용사 단독일 경우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기타 출자조건 및 인센티브 적용은 본 출자공고의 해당 출자 분야(소셜임팩트 분야는 1차 공고)에 따름</li> <li>○ 국가 간 협력펀드는 정부 간 협약 등에 따라 해외 정부 및 소속기관 등이 공동출자 하는 경우 출자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li> </ul>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납(capital call)</li> </ul>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운용사 또는 해외·국내 공동운용사(Co-GP)</li> <li>* 한국에 상주인력을 보유하거나 투자기간 내 일정 횟수기간 이상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해야 하며,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협력하여야 함</li> <li>* 국내 운용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조합이나 회사를 운용할 수 있는 자로, 창업투자회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국가 간 협력펀드에 한하여 국내 운용사 단독 운용 가능)</li> <li>* 해외·국내 공동운용사(Co-GP) : 두 운용사 모두 공동운용사 또는 펀드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양사의 인력이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멤버로 참여하는 등 공동운용 구조로 설계</li> </ul>
기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li> <li>1) 한국벤처투자 출자 약정액의 50% 이상을 해외 출자자가 출자</li> <li>2)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이 있는 자로, 한국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역 2명 이상이 펀드매니저로 참여 필요</li> </ul>
펀드 결성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li> </ul>
펀드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내외(투자기간 : First Closing 또는 Final Closing으로부터 5년 내외 협의 가능)</li> </ul>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사 소재 국가의 벤처캐피탈 Market Standard를 반영하여 신청사와 협의 가능</li> <li>○ 해외 출자자를 포함한 타출자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li> </ul>
관리보수	
성과보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 통계 작성을 위한 펀드 운용 정보(투자 내역, 출자자 정보 등) 제공 의무</li> <li>○ 상기 주요 출자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출자 신청 하는 경우 사전 협의</li> <li>○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li> </ul>

## 5. 인센티브

항 목	내 용															
추가 성과보수	<p>○ 운용사는 다음 추가 성과보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추가 성과보수는 상기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운용사가 수령할 추가 성과보수의 한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p> <p>①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단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해당되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p> <p>- (부여 대상) 신주보통주 방식 투자, 창업초기기업 투자, 지방기업 투자</p> <p>② 전체 회수금액 중 M&amp;A* 방식으로 회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추가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p> <table border="1" data-bbox="411 813 1270 992"> <thead> <tr> <th>회수 비율</th> <th>성과보수</th> </tr> </thead> <tbody> <tr> <td>20% 이상</td> <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5% 이내 지급 가능</td> </tr> <tr> <td>30% 이상</td> <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7% 이내 지급 가능</td> </tr> <tr> <td>50% 이상</td> <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 가능</td> </tr> </tbody> </table> <p>* 투자기업 인수자가 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① 최대 주주가 되었거나 ② 등기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했거나 ③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만 인정(단, 단독일 경우 전략적 투자자여야 하며, SPAC 등에 매각하는 경우 불인정)</p> <p>③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p> <p>※ 본 추가 성과보수는 회수펀드 및 역외펀드로 조성되는 해외VC 글로벌 펀드에는 적용하지 않음</p>	회수 비율	성과보수	2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5% 이내 지급 가능	3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7% 이내 지급 가능	5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 가능							
회수 비율	성과보수															
2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5% 이내 지급 가능															
3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7% 이내 지급 가능															
5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 가능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p>○ 운용사는 모태펀드가 민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이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을 부여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p> <p>*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벤처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곳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모태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적용 가능)</p> <table border="1" data-bbox="427 1630 1382 1912">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lt;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gt;</th> </tr> <tr> <th>구분</th> <th colspan="2">적용조건</th> </tr> </thead> <tbody> <tr> <td>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td> <td>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10% 한도</td> <td>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20% 한도</td> </tr> <tr> <td>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td> <td>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td> <td>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td> </tr> <tr> <td>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td> </tr> </tbody> </table> <p>※ 본 우선손실 충당 및 우선수익 배분의 경우 역외펀드로 조성되는 해외VC 글로벌 펀드에는 적용하지 않음</p>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10% 한도	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20% 한도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10% 한도	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20% 한도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항 목	내 용						
콜옵션	<p>○ 운용사는 모태펀드가 민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p> <p>*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벤처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곳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조건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가격 = 원금 * (1 + 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0.5%)<sup>경과기간</sup></li> <li>• 행사 기간 : 존속기간이 7년 미만일 경우 결성일로부터 3년, 존속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결성일로부터 4년.</li> <li>• 적용 대상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콜옵션 부여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창업초기, 엔젤세컨더리, 지방기업, 소셜 임팩트, 여성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출자지분 50%</td> </tr> <tr> <td>스마트공장, 해외VC 글로벌 펀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출자지분 20%</td> </tr> </tbody> </table> <p>* 유한책임조합원의 콜옵션 행사는 행사시점 당시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한도로 함</p> </div> <p>※ 역외펀드로 조성되는 해외VC 글로벌 펀드에는 적용하지 않음</p> <p>※ 향후 콜옵션 부여 분야와 한도는 변경 될 수 있음</p>	분야	콜옵션 부여 한도	창업초기, 엔젤세컨더리, 지방기업, 소셜 임팩트, 여성기업	모태펀드 출자지분 50%	스마트공장, 해외VC 글로벌 펀드	모태펀드 출자지분 20%
분야	콜옵션 부여 한도						
창업초기, 엔젤세컨더리, 지방기업, 소셜 임팩트, 여성기업	모태펀드 출자지분 50%						
스마트공장, 해외VC 글로벌 펀드	모태펀드 출자지분 20%						

## 6. 기타 사항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 단, 조합의 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하 “운용인력”)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
-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제안할 경우 운용인력의 신규 채용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 가능. 단, 조합 결성 이전에 채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의 인력 구성은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II-1.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해외VC글로벌펀드 외 적용)

###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 약정총액의 30% 이상을 지방기업,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신주보통주 투자로 제안하는 경우(단,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이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인 경우 우대하지 않음)
- \* 여성이 최대주주이거나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 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기업에만 한정
-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거나 지방 소재 운용사일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외국 자본이 약정총액의 10% 이상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2. 선정배제·선정보류·선정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1)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사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설립 근거 법령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말함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 1차 심의 종료일까지 시정명령 처분이 이행되었거나 업무정지가 종료되었음이 관계당국으로부터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기간에 걸쳐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마.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경력(민간, 대학 등에서의 투자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 1년 이상인 전담인력 1인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사.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2항 준용)

- 채무 변제일이 3개월 이상 초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안서 접수마감일의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가결산 포함) 기준으로 판정하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단, 직전 분기말 기준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있는 경우 해당 보고서 제출가능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아래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라.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마.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단,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및 개인투자조합은 제외)
- 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 사.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 대표펀드매니저는 소속 운용사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이어야 하며,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투자 경력이 1년 이상 이어야 함

펀드 규모	최소 기준 인원
(개인투자조합에 한함) 100억원 이하	1명
300억원 이하	2명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3명
800억원 초과	4명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2 참고

## (2) 선정 보류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3) 선정 취소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운용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단,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  
원이 전문엔젤일 경우 제외)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  
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이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운용인력은 결성 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사업의 운용인력 자격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결성 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취소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거부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본 제재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공고 조건에 따라 출자 제한 면제할 수 있음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 선정 조합 중 외국 자본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비율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

## II-2. 선정 배제 등 (해외VC글로벌펀드 적용)

### 1. 선정 보류

-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보류 가능

### 2.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공고문상 출자조건,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라. 선정 후 펀드 결성 또는 출자금 납입 이전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해외 자조합에 참여하는 투자 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III. 선정 절차 및 일정

#### 1. 혁신성장·스마트공장·회수·지방기업·여성기업·창업초기 대상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필수	'19. 7. 8.(월) 10:00부터 '19. 7. 10.(수) 14:00까지	기본정보 온라인 신청 (온라인, 현장 접수 운용사 모두 적용)	상세내용 21페이지 참조
선택1	'19. 7. 9.(화) 10:00부터 '19. 7. 10.(수) 14:00까지	제안서 접수 (온라인)	
선택2	'19. 7. 11.(목) 9:30부터 '19. 7. 11.(목) 14:00까지	제안서 접수 (현장)	
선정	'19. 8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19. 11월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해외VC글로벌펀드 대상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 → 2차 심의(운용사 프리젠테이션)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공고일 ~ 출자목표액 소진일	제안서 접수	제안서 제출 이전 사전 협의
접수 후 4주 내외	선정결과 통보	개별 통지

#### I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1. 혁신성장·스마트공장·회수·여성기업·창업초기·지방기업 대상

###### ○ 지원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접수 선택 가능하나, **온라인 접수를 권장** (하반기 출자사업부터 온라인 접수만 시행 예정)

###### 가. [필수] 기본정보 온라인 신청 (온라인, 현장 접수 운용사 모두 적용)

: 첨부(출자신청서) 내용을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에 온라인으로 기본정보 신청

###### 나. [선택1]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매뉴얼(붙임3.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

- \* 제안서 원본, 제안서 제본 3부, USB메모리를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현장 접수 필요 없음)

###### 다. [선택2] 현장 접수 : 제안서 양식(붙임2.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http://install.k-vic.co.kr>

######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9. 6. 18.(화) 15:00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16 VR빌딩 지하1층 블루룸
- ※ 설명회 참석 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주차공간 미제공

##### 2. 해외VC글로벌펀드 대상

- 지원 방법 : 출자신청서(첨부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접수 기간 : 공고일 ~ 출자목표액 소진시 까지

## V.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VI.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현장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엔젤투자본부  
(엔젤투자본부 :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제안할 경우)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지하 1층
- 문의 방법
  - 가. 혁신성장·스마트공장·회수·지방기업·여성기업·창업초기 분야 :02-2156-2060, fof@k-vic.co.kr
  - 나. 개인투자조합 : 02-2156-2030, angelfof@k-vic.co.kr
  - 다. 해외VC글로벌펀드 : 02-2156-2177, khwjnr@k-vic.co.kr
  - 라.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9. 6. 13.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 <별첨1> 개인투자조합 신청 가능한 운용사

업무집행조합원	법적 근거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고시기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엑셀러레이터” 단, 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ii) 신기술사업금융업자 i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iv)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 〈별첨2〉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신청 자조합의 각 운용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2,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

**[ 개인투자조합 ]**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대표펀드매니저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개인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5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2.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